## 한국인터넷진흥원 정관

제정(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인가) 2009. 7. 1. 개정(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인가) 2010. 8. 4. 개정(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인가) 2012. 1. 20. 개정(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인가) 2012. 4. 23. 개정(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인가) 2013. 7. 2. 개정(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인가) 2014. 4. 10. 개정(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인가) 2015. 4. 24. 개정(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인가) 2015. 9. 3. 개정(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인가) 2016. 1. 28. 개정(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인가) 2017. 7. 13. 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가) 2017. 8. 23. 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가) 2018. 7. 13. 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가) 2019. 4. 24. 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가) 2019. 12. 12. 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가) 2020. 6. 10. 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가) 2020. 9.28. 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가) 2021. 2. 22. 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가) 2022. 6.30. 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가) 2023. 1. 3. 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가) 2024. 7. 15.

####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이 법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Internet and Security Agency(약칭 KISA)로 표기한다.
- 제2조(목적) 진흥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소재지)** ① 진흥원의 주 사무소는 전라남도 나주시에 둔다.<개정 2017. 7. 13.>

- ② 진흥원은 필요한 경우에 부설기관 및 지원을 국내·외에 둘 수 있다.
- ③ 국외에 지원을 둘 경우에는 현지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제2장 임원 및 직원

- **제4조(임원)** ① 진흥원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23. 1. 3.〉
  - 1. 원장 1인
  - 2. 이사 15인 이내(원장 1인,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인(이하 '노동이사'라 한다.), 원장을 제외한 2인 이내의 상임이사 포함)
  - 3. 감사 1인
  - ② 원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제5조(임원의 선임) ① 원장은 임원 후보자 추천 등을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이하 "임원추천 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 7. 2, 2017. 8. 23, 2020. 6. 10>
  - ②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 8. 4.>
  - ③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임명한다. 이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4, 2013. 7. 2, 2017. 8. 23, 2020. 6. 10, 2023. 1. 3.〉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직에 임명된 날부터 당연히 이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가 된다. <개정 2023. 1. 3.>
  - 1. 워장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개정 2013. 7. 2, 2014. 4. 10, 2015. 4. 24, 2015. 9. 3, 2017. 8. 23, 2019. 12. 12.>
  - 3. 삭제 <2012. 4. 23.>
  - 4. 삭제 <개정 2013. 7. 2, 2015. 4. 24, 2016. 1. 28, 2017. 8. 23, 2018. 7. 13. 2020. 9. 28>
  - 5.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개정 2013. 7. 2>
  - 6.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협력기획관<개정 2016. 1. 28, 2019. 4. 24, 2024. 7. 15.>
  - 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개정 2021. 2. 22.>
  -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0. 6. 10, 2023. 1. 3.〉

- 제6조(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권자가 연임을 결정한 경우에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개정 2013. 7. 2., 2017. 8. 23., 2023. 1. 3.>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이사가 연임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추천 또는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 3.〉
  - 1.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가 임명권자에게 노동이사 연임 후보자를 추천
  - 2.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진흥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재적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노동이사 연임 후보자를 임명권자에게 추천
  - ④ 임원의 임기는 임명권자가 임명한 날부터 기산한다.
  -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 ⑥ 노동이사는 근로계약의 종료 등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노동이사의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노동이사의 지위를 상실한다. 〈신설 2023. 1. 3.〉
- 제7조(임원의 직무 등)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진흥원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원장은 진흥원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진흥원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감사가 진흥원을 대표한다.
  - ③ 상임이사는 원장의 명을 받아 직제규정이 정한 업무를 집행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한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 ⑤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원의 임원이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4. 7. 15.>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제9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상법」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및 제401조 (제삼자에 대한 책임)의 규정은 진흥원의 이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하고, 「상법」 제414조(감사의 책임) 및 제415조(준용규정)의 규정 중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에 관한사항은 진흥원의 감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9조의2(노동이사의 권한) 노동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법」등에 따른 비상임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23. 1. 3.〉
- 제9조의3(노동이사의 의무와 책임) 노동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법」등에 따른 비상임이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진다. 〈신설 2023. 1. 3.〉
- 제10조(임원의 신분보장)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에 해임되지 아니한다.
  - 1.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에 위반한 경우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흥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 3. 신체장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경우
- 제10조의2(노동이사의 불이익 처우 금지) ① 원장은 노동이사 및 노동이사였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이사로 임명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인사, 포상,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불이익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원장은 노동이사가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부서 또는 직무에 배치하여야 한다.
  - ③ 원장은 노동이사에게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 제공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하고, 노동이사는 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노동이사의 이사회 출석 및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23. 1. 3.]

- 제11조(직원) ① 진흥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 ② 직원의 정원, 인사·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상임임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개정 2013. 7. 2., 2017. 8. 23.>
- ③ 제1항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따른다.〈신설 2022. 6. 30.〉

## 제3장 이사회의 운영

- 제13조(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 2.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 3. 결산
  -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그 상환 계획
  - 6. 잉여금의 처분
  - 7.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
  - 8.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
  - 9. 정관의 변경
  - 10. 규정의 제정과 변경
  - 11.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중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 12. 임원의 보수
  - 13.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 14.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국정감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회계 감사와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
  - 2.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
  - 3. 그 밖에 이사회가 원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 제14조(구성) ①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의 의장은 원장이 된다.

- 제15조(회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과 12월에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회의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 ③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출석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6조(의결)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 제17조(의결권의 제한) 이사회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18조(선임(先任)비상임이사) ① 진흥원에 선임비상임이사 1인을 둔다.
  - ②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
  - ④ 원장은 선임비상임이사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9조(회의록)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작성된 회의록은 보고 및 확인을 거쳐 이를 주 사무소에 보존한다.

## 제4장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 제20조(사업) ① 진흥원은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력·국외진출 등을 위한 법·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 2.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와 관련한 통계의 조사분석
  - 3. 정보통신망의 이용에 따른 역기능 분석 및 대책 연구
  - 4.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훈련

- 5.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 및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 6. 지식정보보안 산업정책 지원 및 관련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 7. 정보보호 안전진단,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의 실시·지원, 정보보호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 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의 연구 및 보호기술의 개발·보급의 지원
- 9.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
- 10. 광고성 정보 전송 및 인터넷광고와 관련한 고층의 상담·처리
- 11.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처리, 원인분석 및 대응체계 운영
- 12.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인증관리 〈개정 2024.7.15.〉
- 13. 인터넷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 14. 인터넷 이용자의 저장 정보 보호 지원
- 15. 인터넷 관련 서비스정책 지원
- 16. 인터넷상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건전 정보 유통 확산 지원
- 1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
- 18.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개정 2024.7.15〉
- 19. 정보보호의 촉진, 인터넷주소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비영리단체 및 전문가의 국내외 활동지원
- 20.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 홍보 및 국외 진출 지원
-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 2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 및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개정 2013. 7. 2., 2017. 8. 23.>
- 23. 진흥원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매입, 임대 기타 수익사업
- ② 진흥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을 위탁받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21조(자문위원회) ①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흥원의 원활한 사업수행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22조(경영공시) 진흥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고, 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한다.
- 제23조(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① 진흥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객헌장을 제정하여 공표한다.
- ② 진흥원은 진흥원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 제24조(경영혁신전략·계획의 수립) 진흥원은 경영효율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매년 경영혁신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 제25조(경영목표의 수립) ① 원장은 사업내용과 경영환경,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0, 2013. 7. 2., 2017. 8. 23.〉
  - ② 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경영실적 등의 보고) 원장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원장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 2017. 8. 23.>

#### 제5장 자산 및 회계

- 제27조(재산)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받은 재산
  - 2.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전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②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제28조(기본재산의 처분제한) 진흥원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 7. 2., 2017. 8. 23.>
- 제29조(운영재원)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수입, 적립금의 과실, 출연금, 차입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30조(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1조(회계원칙) 진흥원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32조(예산 및 운영계획) ① 진흥원의 예산은 예산총칙·추정손익계산서·추정대차대조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 ②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과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 7. 2., 2017. 8. 23.〉
  - ③ 예산이 확정된 후 진흥원의 경영목표가 변경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된 예산안과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진흥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33조(사업실적과 결산)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당해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
  - 3. 감사의 의견서
  - 4.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 5. 기타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
- 제34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년도로 이월하거나 기본재산에 전입한다.

#### 제6장 보칙

- 제35조(비밀유지의 의무) 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6조(지적재산권 등의 귀속) 진흥원의 임·직원이 그 직무수행 중에 이룩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 등은 따로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흥원의 재산으로 한다. 다만, 당해 임·직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37조(정관의 변경) 진흥원의 정관변경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7. 2., 2017. 8. 23.>
- 제38조(해산) ① 진흥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7. 2., 2017. 8, 23.>
  - ② 진흥원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유사목적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단체, 기타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 제39조(제규정)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중요규정 이외의 규정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40조(공고방법) 법령 또는 이 정관에 따른 진흥원의 공고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진흥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회계연도)** 진흥원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 제3조(사업계획 등) 진흥원의 설립연도에 속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설립 후 3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권리·의무의 중계) 진흥원의 설립으로 해산하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 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진흥원이 그 일체를 포괄 승계한다.
- 제5조(직원의 숭계) 진흥원의 설립으로 해산하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직원의 고용관계는 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 제6조(경과조치) ① 진흥원이 공공기관으로 고시되기 이전에는 비상임이사와 감사를 임원

추천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추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이 정관의 시행일 이후에도 제39조에 따라 제정·시행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는 진흥원 설립 이전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제규정 중 원장이 지정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2010. 8. 4>

이 정관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2. 1. 20>

이 정관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2. 4. 23>

이 정관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3. 7. 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장 등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원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이 정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임기 개시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2014. 4. 1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장 등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원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이 정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임기 개시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2015. 4. 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장 등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원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이 정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임기 개시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2015. 9. 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장 등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원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이 정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임기 개시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2016. 1. 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장 등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원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이 정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임기 개시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2017. 7. 1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7. 8. 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장 등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원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이 정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임기 개시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2018. 7. 1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장 등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원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이 정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임기 개시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2019. 4. 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장 등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원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이 정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임기 개시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2019. 12. 1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장 등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원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이 정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임기 개시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2020. 6. 1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장 등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원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이 정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임기 개시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2020. 9. 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장 등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원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이 정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임기 개시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2021. 2. 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장 등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원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이 정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임기 개시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2022. 6. 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23. 1. 3.>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제6조 제3항 및 제6항,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3,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 이후 노동이사인 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정관 제5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2024. 7. 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